

의안번호	2206063
의 퇴 인	이재정의원
회 답 일	2024. 12. 19.
추 계 번호	24D550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소방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8억 5,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9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안 제5조제2호)	478	527	650	785	896	965	953	928	913	811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에 관한 적용례(안 부 칙 제2조)	1070	44	44	44	35	10	—	—	—	48
합계	1,548	571	694	829	931	975	953	928	913	859

- 주: 1.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안 제5조제2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범위의 확대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 받는 소방공무원 수가 4명 증가하고 대표유족(유족연금수급자)은 여성 배우자, 연령은 50세로 가정하고,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따른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
 3. 유족연금 부분의 추가재정소요는 장기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어 추계기간을 2026년부터 2093년까지로 하고 연평균 추가재정소요를 제시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2호(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 ¹⁾ , 제16조의2제1항 ²⁾ , 제16조의3제1항 ³⁾ , 제17조제1항 ⁴⁾ 에 따른 소방활동 등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으로 규정함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으로 규정함	의무규정
2	안 부칙 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	안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적용	의무규정

- 1)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2015.7.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4)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2호(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2	안 부칙 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범위의 확대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 받는 소방공무원 수가 4명 증가하고 대표유족(유족연금수급자)은 여성 배우자, 연령은 50세로 가정
 -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한 건수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평균 4건⁵⁾이었고, 이 건수만큼 개정안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인정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순직 승인된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대표유족의 평균 연령은 50세
- 개정안에 따라 매년 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소방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순직유족연금 대비 위험직무순직연금 지급률이 5%p 높고 유족보상금 지급배수도 24배에서 45배를 적용받게 되므로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에서 추가재정소요 발생
 - (순직유족연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유족 1인당 5%를 가산하며 가산은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음

5) 2020년 9건 청구에 8건 인정, 2021년 8건 청구에 4건 인정, 2022년 10건 청구에 3건 인정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유족 1인당 5%를 가산하며 가산은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유족보상금) 순직공무원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45배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상승률, GDP디플레이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 3월에 작성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V」 보고서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상승률, GDP디플레이터 적용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연금급여의 장기적인 지출 특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93년까지로 하고 GDP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2024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제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안 제5조제2호)

-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확대하여 현행보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수의 증가로 유족연금, 유족보상금에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1) 유족연금 증가액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순직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되는 소방공무원이 매년 4명이 발생하고 유족은 3명, 대표유족(유족연금 수급자)은 여성 배우자, 연령은 50세로 가정
 - (수급자 수) 순직공무원에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소방공무원의 유족연금수급자가 매년 4명 발생하고 추계기간 동안 여성의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자료)을 적용하여 수급자 수 추계

- (증가액) 수급자 1인당 유족연금 증가액은 2026년 기준 연간 355만원
 -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순직 인정된 소방직공무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5,728,309원으로 추정⁶⁾
 - － (현행) 순직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
 - － (개정안) 위험직무순직요건에 해당하여 유족연금 지급률이 45%로 5%p 상승
 - － 유족연금 수급개시 후 두 번째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

□ 개정안에 따른 유족연금 증가액은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3억 9,200만원(2024년 불변가격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2] 위험직무순직 소방공무원 요건 재해범위 확대에 따른 유족연금 증가액: 2026~2093년

구분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수급자 수 (A, 명)	2026	4	4	4	4	3	1	—	—	—	—
	2030	—	4	4	4	4	2	—	—	—	—
	2040	—	—	4	4	4	4	2	—	—	—
	2050	—	—	—	4	4	4	4	3	2	—
	2060	—	—	—	—	4	4	4	4	4	—
	2070	—	—	—	—	—	4	4	4	4	—
	2080	—	—	—	—	—	—	4	4	4	—
	2090	—	—	—	—	—	—	—	4	4	—
	2093	—	—	—	—	—	—	—	—	4	—
증가액 (B, 만원, 2024년 불변가격 기준)	2026	355	359	366	374	381	389	396	404	407	—
	2030	—	349	356	363	370	378	385	393	395	—
	2040	—	—	336	343	350	356	364	371	373	—
	2050	—	—	—	332	339	345	352	359	361	—
	2060	—	—	—	—	323	329	336	342	344	—
	2070	—	—	—	—	—	313	319	326	328	—
	2080	—	—	—	—	—	—	301	307	309	—
	2090	—	—	—	—	—	—	—	286	287	—
	2093	—	—	—	—	—	—	—	—	280	—
추가재정소요 (연도별 A×B의 누적 합계, 백만원, 2024 년 불변가격 기준)		14	71	210	349	476	557	561	556	549	391

주: 1. 2026~2093년 기간 동안 코호트방법으로 유족연금 증가액을 추계하였으며, 지면 관계상 5년 단위로 정리하여 나타냄
 2. 순직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되는 소방공무원이 매년 4명이 발생 추계기간 동안 여성의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자료)을 적용하여 수급자 수 추계하면, 2026년 수급자 4명은 2075년경에 모두 사망하여 수급자 수는 0명
 3. 증가액은 최초 연금액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유족연금 지급률을 5%p 인상하여 적용한 후 두 번째 연도부터는 전년도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데,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보수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유족연금 증가액이 2026년 355만원에서 2093년 28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6) 소방공무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순직 승인된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순직인정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최초 연금액 평균은 3,036,004원이고 유족연금 지급률 53%(=38% + 유족 3명 15%)로 나누면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5,728,309원

(2) 유족보상금 증가액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순직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되는 소방공무원이 매년 4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족보상금 증가액 추계
- (대상자 수) 순직공무원에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소방공무원이 매년 4명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증가액) 2026년 기준 1인당 유족보상금 증가액은 1억 1,600만원
 - 순직공무원의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이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45배를 적용
 - 개정안에 따라 1인당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1배(=45배-24배)가 증가
 - 유족보상금은 일시금형태의 급여이므로 매년 4명에 해당 연도의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23년 기준 544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보수상승률에 따라 상승
- 개정안에 따른 유족보상금 증가액은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4억 2,000만원(2024년 불변가격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3] 위험직무순직 소방공무원 요건 재해범위 확대에 따른 유족보상금 증가액: 2026~2093년

구분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대상자 수 (A, 명)	4	4	4	4	4	4	4	4	4	-
증가액 (B, 백만원, 2024년 불변가격 기준)	116	114	110	109	105	102	98	93	91	-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2024년 불변가격 기준)	464	456	440	436	420	408	392	372	364	420

(3) 추계결과

- 위험직무순직 소방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범위 확대에 따른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증가액 추계결과,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8억 1,100만원(2024년 불변가격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4] 위험직무순직 소방공무원 요건 재해범위 확대에 따른 소요비용: 2026~209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유족연금 증가액	14	71	210	349	476	557	561	556	549	391
유족보상금 증가액	464	456	440	436	420	408	392	372	364	420
합계	478	527	650	785	896	965	953	928	913	811

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개정안은 부칙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앞서 추계한 내용과 동일하게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3~2025년 동안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는 소방공무원이 매년 4명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증가액 추계
 -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 지급되므로 2023~2025년 기간 동안의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2026년에 소급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⁷⁾
- 추계결과, 개정안 부칙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소방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2023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에도 적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4,800만원(2024년 불변가격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7) 소급 지급에 따른 이자 가산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자 가산 여부, 이자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함

[표 5] 위험직무순직 소방공무원 요건 재해범위 적용례에 따른 소요비용: 2026~209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소급 지급	유족연금 증가액	86	-	-	-	-	-	-	-	-	2
	유족보상금 증가액	940	-	-	-	-	-	-	-	-	20
2026년 부터 유족연금 증가액		44	44	44	44	35	10	-	-	-	26
합계		1,070	44	44	44	35	10	-	-	-	48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보수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전망되었으나, 향후 실제 공무원보수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